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49<sup>th</sup> September 2012

- ▶ WHERE IS GRACE CHANG?:  
복기(復棋)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추석명절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는 정확하게  
통관환급은 신속하게! ..... 3
- ▶ FTA NEWS:  
ASEAN 시장 FTA 로 키운다 ..... 4
- ▶ VOICES FROM THE FIELDS:  
통관업무 전자문서화와  
전국해관 분류통관 실시 ..... 6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7
- ▶ CUSTOMS PRECEDENT ㉓ ..... 8

## SHINHAN NEWS



**즐거운 추석  
되세요!**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복기(復棋)



장승희  
대표 관세사

2004년 4월 신선한 바람으로 한-칠레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줄기 바람은 ASEAN, EU, 미국등과의 FTA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강하게 부는 바람이 오히려 서로의 협력보다는 이해관계를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적극적 환영과 결사적 반대가 공존하였습니다.

며칠전 참석한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는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FTA 환영기업에게는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하며, 반대기업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가올 한-중 FTA를 준비하며 호흡을 조절해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Spaghetti Bowl 이라 불리는 원산지 규정 등의 세부 내용에서부터 농어업 경쟁력을 위한 보완대책까지 저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복기(復棋)가 필요한 것이지요.

바둑에서 복기는 자신이 둔 수를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꼼꼼하게 되짚어 보는 것으로, 새로운 수를 탐색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 한 해 동안 흘린 농부의 땀을 기억하며, 저희 신한인도 감동서비스를 위하여 늘 복기(復棋)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원산지 표시는 정확하게!  
통관환급은 신속하게!



임보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mailto:bhl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공항지사
- 28기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FTA News-

ASEAN 시장  
FTA로 키운다!



강승주 관세사  
([sjkang@customsservice.co.kr](mailto:sjka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eam
- 원산지 관리자
- 前) LG 전자(주) HE 본부 관세그룹

Voices From The Fields-

통관업무 전자문서화와  
전국해관 분류통관 실시



임창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관세청 심사정책국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부산국제우편세관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선경 관세사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한국무역협회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경기 북서부 전담 관세사

Customs Precedent ㉠

프로션 차원에서 특별할인 된  
쟁점가격의 과세 처분



남중모 관세사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컨설턴트
- 무역협회 아카데미 강사

Cover Story

# 추석명절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는 정확하게! 통관·환급은 신속하게!

추석 특수를 앞두고 경제각계에서 내수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관세청에서는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수출입통관 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집중단속, 긴급통관 건에 대해서는 통관물류 활성화 및 환급의 원활화에 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Cover-Story 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은 관세청의 특별대책들에 대해 알아보자.

### □ 제수용품 원산지위반 특별단속

관세청은 추석 명절 제수용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전개한다

관세청은 이번 19일 간의 특별단속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곳감·조기(굴비)·갈치·오징어·버섯·쇠고기·돼지고기·제기용품 등 제수용품 일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며,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할 계획으로 단속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과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 □ 추석 제수용품 우범정보 없을 시 현품 검사 생략

추석명절을 전후로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의 수입통관 시 별도의 우범정보가 없을 경우 현품검사가 생략된다. 또한, 명절기간을 맞아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일선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개설·운영된다. 이 기간 중에는 긴급물품

### 제 245 조(반입명령)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1. 법 제 227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 230 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 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 개청이 허용되며, 추석 연휴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등 미선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 □ 추석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돕기 위해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17일부터 28일까지로 '환급특별지원반'을 운영해 지원기간 중 환급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당일 환급금 추취
- 서류심사 필요 시에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환급금

우선지급 후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  
• 환급 관련 업무처리 시간은 기존 오후 6시 에서 8시까지 연장

다만, 연휴 전날인 28일은 오후 4시 이후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서둘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bhlim@customsservice.co.kr](mailto:bhlim@customsservice.co.kr)

# ASEAN 시장, FTA 로 키운다

지난 8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베트남 FTA는 기존 한-아세안 차원에서 이뤄진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FTA를 보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7월 12일 자카르타에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 1차 협상이 열렸다. 세계 4위의 인구 규모, 풍부한 천연자원, 고성장과 함께 확대중인 내수시장, 여기에 동아시아 경제·외교 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까지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CEPA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짐작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 □ 한-ASEAN FTA 5년의 성과와 전망

### 1. 아세안, 한국의 중요한 교역과 투자 파트너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의 약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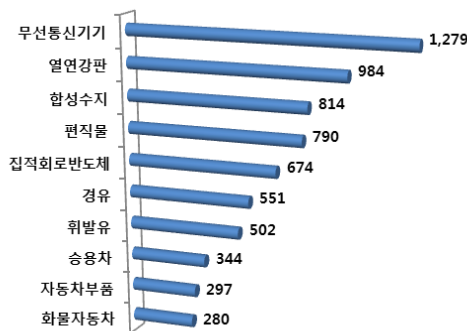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10 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이다.

한국은 아세안 10 개 회원국과 상품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양자간 FTA에 합의해 지난 2007년 6월 1일 상품부문 FTA가 발효되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서비스협정(2009년 5월 1일) 및 투자협정(2009년 9월 1일)이 발효되었다.

한·아세안 교역액은 FTA 발효 전년도인 2006년 618억 달러에서 2011년 1250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수출은 321억 달러에서 719억 달러로 2.24배 늘고, 수입은 297억 달러에서 531억 달러로 1.79배 증가했다. 또한 한·아세안 FTA 발효 후 대 아세안 무역수지는 2007년 56억 달러 흑자에서 2011년 187억 달러 흑자로 연평균 35.2%증가했다.

### 2. 개방 수준 낮고 까다로운 절차 개선해야

한국은 한·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를



대 베트남 10대 수출품목(2011년 기준)  
(단위: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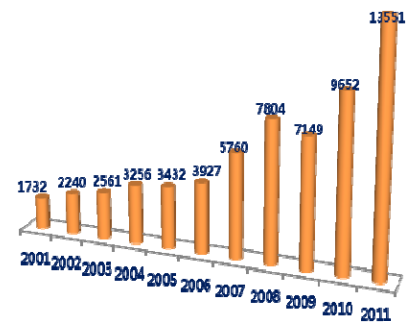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가 체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세안 10 개 나라가 원하는 것이 모두 달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각기 FTA와 CEPA를 추진하고 있다.

## □ 한-베트남 FTA 협상개시

### 1. 의미와 전망

한-베트남 FTA가 최종 타결될 경우 한국은 2015년 경제통합을 앞두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하게 됨은 물론 신흥시장 진출확대, 수출선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베트남은 이미 작년 기준 아세안 국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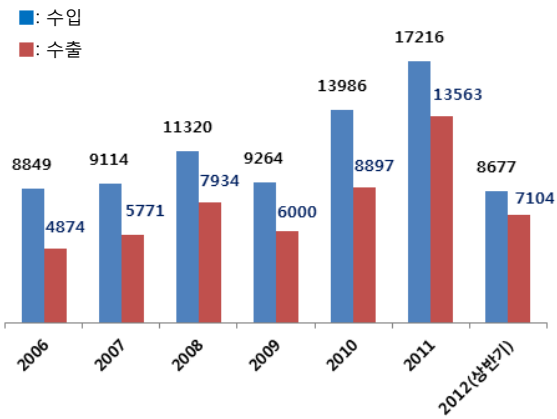


대 베트남 수출 동향(2011년 기준)  
(단위: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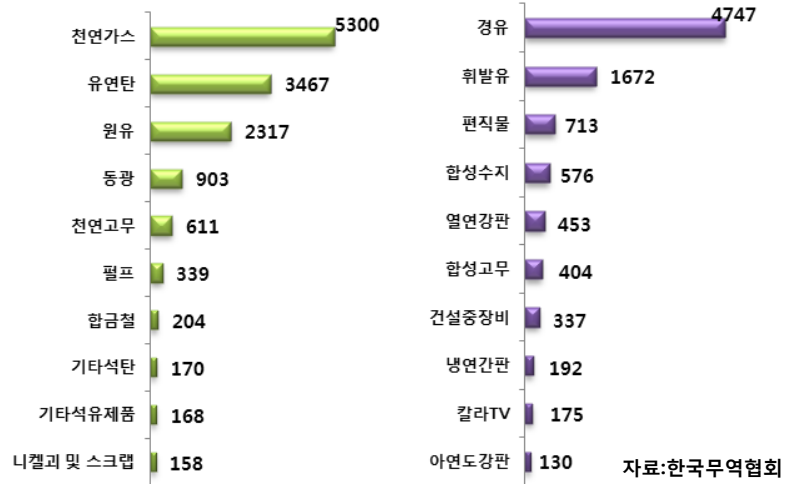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의 3위 교역 대상국이다. 또 베트남은 석탄과 보크사이드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원 부국이다. 아울러 베트남은 아세안,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협력업체(TPP)에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FTA, 양국 경제발전의 새 활력소

작년 11월 발표된 한-베트남 간의 공동연구 조사에 따르면 양국이 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면 두 나라 모두 GDP와 수출이 모두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했지만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한·아세안 FTA



한-인도네시아 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대 인도네시아 10대 교역 품목 현황(2011년 기준)  
(단위:백만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활용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다자 간 협정이다 보니 각국의 의견조율이 어려워 무관세 교역 품목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전자·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제품들은 대부분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이 베트남과 별도의 양자 FTA를 추가로 맺으려는 이유이다.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은 상품·서비스 및 투자 외에도 에너지 광물 자원 등의 경제 협력은 물론 투명성, 지적재산권 이슈까지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 한-인도네시아 CEPA 2차 협상 개최 합의

#### 1. 의미와 전망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교역 규모 1위 국가이다. 한국은 당초 인도네시아와 FTA 체결을 제안했으나, 인도네시아 측이 CEPA를 제의하면서

양국 간 CEPA 체결 협상이 성사 되었다. CEPA는 상품·서비스·교역·투자·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 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FTA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무역자유화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의 국가 간 경제협정을 의미한다. 양국간 CEPA가 성사되면 교역이 더욱 증진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윈-윈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첫 번째 CEPA 상대국인 인도는 2010년 CEPA 발효 후 교역규모가 매년 55%씩 증가하고 대 인도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2. CEPA 추진으로 양국간 교역관계 업그레이드

금융위기로 무역이 감소한 2009년을 제외하고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대비 무려

52.4%증가한 135억 6,300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가 오는 2020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자 투자처로 급부상한 인도네시아와 CEPA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시장 진출에 있어 분명한 계단 우위에 서있다

·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강 승 주

[sjkang@customsservice.co.kr](mailto:sjkang@customsservice.co.kr)



# 통관업무 전자문서화와 적국해관 분류통관 실시

중국 해관총서는 해관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전면적인 분류통관 개혁실시를 결정하고, 전국해관에 통관업무의 전자문서화 시범사업을 위한 다음사항을 공고(해관총서 제 38 호, 2012.7.31)하였다. 지난 8 월 1 일부터 시행된 동 공고내용은 이하 설명하는 바와 같다.

NO	해관	내용	NO	해관	내용
1	북경해관	항공 수입화물	7	청도해관	해상 수출화물
2	천진해관	해상 수입화물	8	광주해관	항공 수출화물
3	상해해관	해상 수출입화물	9	심천해관	육로운송 항만 수출화물
4	남경해관	해관 특수감관구 수출입화물	10	공북해관	육로운송 항만 수입화물
5	항주, 닝보해관	해관 환적 수출입화물	11	황포해관	육로운송 해관환적 수출입화물
6	복주해관	對대만 수출입화물			

(표 1) 해관별 통관업무

1. 주요 해관별 통관업무 전자문서화 개혁 시범사업 운영범위는 표 1 과 같다.
2. “통관업무 전자문서화”란 해관이 기업분류 관리와 위험분석을 기초로 위험등급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분류를 실시하고 IT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이 해관신고서 및 첨부 증빙서류를 해관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기업들이 중국전자항만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전자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이를 세관이 심사 및 검사 등 통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시범기업의 범위로는 해관 관리유형이 AA 류 및 A 류의 수출입기업과 통관대리기업에 한정한다.
4. 시범기업은 소재지관할 직속해관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 직속해관과 제 3 자 인증기관(중국전자항만데이터센터)과 전자데이터 응용에 대한 협의사항에 서명한 후 해당 해관의 범위 내에서 “통관업무 전자문서화”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해관의 승인을 받은 시범기업은 서류화 업무방식 또는 “통관업무 전자문서화” 업무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통관업무 전자문서화”를 선택한 기업은 화물 신고 시 전자항만시스템에서 “통관 전자문서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6. 해관의 승인을 받은 시범기업이 “통관업무 전자문서화”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화물신고 시 해관에 신고서와 첨부 증빙서류의 전자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임시보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단위 AA 류 기업과, 혹은 A 류 기업이 해관의 심의를 거쳐 동의한 경우, 해관의 신고수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증빙서류의 전자데이터를 해관에 전송할 수 있다. 증빙서류 임시보관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단위 AA 류 기업은 증빙서류의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 없이 해관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7. 관련기관이 해관이 보관하고 있는 신고서와 증빙서류의 전자데이터를 열람,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증빙자료 공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허가증(“반출·입 화물 통관신고서”는 제외)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업무 전자문서화”방식을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세액의 전자지불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업무 전자문서화”방식을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통관업무 전자문서화”방식을 이용한 통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기업은 중국전자항만시스템의 “해관신고”기능과 “해관신고 수정/취소”기능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사무관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1. 개정이유

고시개정 이유 및 그 배경은 사전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를 통해 FTA 확대 등에 따라 급증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문을 재정비 한 것임

2. 개정내용

1) 사전심사 처리방식 개선

사전심사 결과통지시 인터넷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우편방식으로 인한 시간적·인적부담 해소(예외사항 규정)

2) 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 등

① 품목분류 민원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15 일→30 일) 충분한 물품분석, 분류논리 연구 등 정확한 품목분류 여건 조성

②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품목분류 사례 등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입 제외대상에서 삭제

3) 사전심사 결과고시 방법 명확화

사전심사 결과 "고시"가 인터넷을 통한 대외 "공개"를 의미함을 명확화

4) 사전심사 결과의 공개 유도

①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 건 외에는 모두 공개 원칙

- 비공개 요청시에도 분류협의회 및 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은 영업비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② 사전심사 신청서에 비공개 시 불이익\*을 명시하고, 비공개의 사유와 내용 제시 요구

\* 사전심사서 유효기간은 1 년으로 제한

3. 시행시기

2012년 9월 중

『수출입 통관』 관련 ISSUE 사항

1. 베트남, 9월부터 중고 전자제품 수입금지

1) 수입금지 사유

베트남은 환경오염, 불량품 생산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프린터, 복사기, 계산기, 휴대전화 단말기 등 중고 전자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힘. 이는 베트남에서 철강 수요 위축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임.

2) 해당품목

HS 8443(프린터류), 8469(타이핑 기기), 8470(계산기), 8473(8469~8472 관련 부품), 8517(8443, 8525, 8524 등의 통신기기 관련 제품), 8518(마이크로폰, 스피커류), 8526(라디오 발신기류), 8527(집적회로류), 8544(케이블) 등

3) 예외규정

전자제품의 유지 보수, 수리·재가공을 위한 중고 기기와 연구용 장비는 허용하나, 목적에 따라 사용 후 재반출 해야 함.

4) 모든 철강품목 통상산업부에 등록 필수

베트남정부는 9월 20일부터 철강제품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면허를 발급한다며, 수입업자는 모든 철강 품목을 통상산업부에 등록할 것을 당부함.

5) 시행일자

9월 1일부터

2. 브라질, 컴퓨터 부품 수입관세 인상

1) 수입관세 인상 품목

노브레이크(No Break), 메모리카드, 인쇄회로 등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핵심 부품

2) 구체적인 수입관세 인상폭

- (1) 노브레이크(HS 8504.40.40) 14% → 20%,
- (2) 메모리카드(8523.51.10) 0% → 16%,
- (3) 인쇄회로(8534.00.11, 8534.00.12, 8534.00.13, 8534.00.19, 8534.00.31, 8534.00.32, 8534.00.33, 8534.00.39, 8534.00.51, 8534.00.59) 10% → 12%

3) 이번 조치로 인한 예상피해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관련 업체에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産 메모리카드는 브라질 수입국 1위며, 인쇄회로, 노브레이크 역시 우리나라가 주요 수입국이라 타격을 클 것으로 우려됨

4) 적용시한

브라질정부는 브라질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관세를 인상해 2015년까지 적용한다고 밝힘

3.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강화

1) 의의

중국정부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최근 증가한 수입식품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2) 중국정부 조치

- (1) 2015년 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중국 규정에 맞는 식품안전 관련 국가표준체계를 구축함
- (2) 육류·수산물을 수출하는 국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중국정부에 사전등록을 하도록 함 이에 국외 식품생산기업은 소재국의 당국을 통해 중국 규정에 맞는지 심사 받은 후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 신청해야 수출이 가능함
- (3) 6월 1일부터 수입 포장식품은 반드시 원라벨 양식, 번역본, 중문라벨 양식, 라벨에 기록한 수입상 및 대리상 공상영업증 복사본,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수입 포장식품의 라벨은 중국 해당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야 하며, 수입 포장식품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요건과 맞지 않으면 불합격 식품으로 판정
- (4) 2013년 1월 1일부터 유통하는 모든 포장식품에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 된 쟁점가격을 할인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6 관 0191 2007.07.11)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스터디하였다. 각 판례들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정정식 관세사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신는다.

□ 거래사실(Facts)

1. 처분내용

- 1) 수입자(이하 청구법인)는 쟁점물품을 케이스 당 미화 100 달러(이하 쟁점가격)로 수입 하였음.
- 2) 청구법인은 국내 독점 업체인 B 사이며, 국내시장에서 경쟁사 수입캔제품의 저가공세로 인한 극심한 판매부진을 타개하고 마케팅 시장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판매가격을 경쟁사 가격수준으로 인하 하고, 수출자인 C 사는 B 사의 판매원가를 보전 하는 방안으로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특별 가격(Special Price)으로 공급하였음.
- 3) 처분청은 신고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실지 검사를 실시하여 관세법 제 30 조 제 3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인화된 금액이 케이스당 100 달러로 계산 가능하므로 쟁점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 B 사에게 경정고지하였음.
- 4) 청구법인 B 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수입자(청구법인 B 사)의 주장

- 1) 쟁점가격은 B 사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C 사가 한시적으로 인하한 실제거래가격으로서 특별프로모션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거래관행임.

- 2)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만, 쟁점가격이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3. 처분청의 주장

- 1) 쟁점가격은 수출자 C 사가 각국의 대리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Distributor price 가 아닌 B 사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하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음.
- 2) B 사가 신고한 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 쟁점(Issue)

수출자 C 사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 1) 관세법

제 30 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I. 수수료 및 중개료
  - II. 포장·용기 비용
  - III. 생산지원비용
  - IV. 권리사용료
  - V. 사후귀속이익
  - VI. 운임·보험료

③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이하 생략)
- 2) 관세법시행령 제 22 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생략)

② 법 제 30 조 제 3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 결정(Holding)

처분청이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 검토의견

본 사례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음

#### 1. 쟁점 물품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① 쟁점 물품이 물품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 가격이 아닌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의 의하여 결정됨.

② 쟁점 물품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수입자가 실제 지급한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 2. 쟁점 물품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① 본 사례의 경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인 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i. 본 사례에서 수출자 C 사가 수입자 B 사에게 제공한 Special 한 가격할인의 경우 판매 또는 가격에 대한 사정(Consideration)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임.

협정의 기본적인 관점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 관한 것이며, 그들 사이에 직·간접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건 및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따라서 Special 한 가격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 또는 사정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임.

ii. 수출자 C 사가 수입자 B 사의 판매원가를 보전하는 방안을 실제지급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 주해 1 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지급 금액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음. 수출자 C 사가 판매원가를 보전해주는 것은 수입자 B 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니며 따라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의 일부가 되어서는 아니됨.

iii. 수입자 B 사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협약(법 제 30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는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 이외에 대하여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본 사례에서 케이스당 미화 100 달러로 수입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이 상기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정(가산)될 수 없음.

② 따라서, 경쟁사의 저가공세의 따른 판매부진 타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할인으로서 실제지급한 가격을 과세하는 것이 GATT 의 자유롭고 평등한 무역질서의 실현이라는 이념에도 부합할 수 있음.

따라서, 수입자 B 가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옳다고 봄.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남 충 모

[cmnam@customsservice.co.kr](mailto:cmnam@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